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6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김선교 · 김종양
이상휘 · 송석준 · 신성범
김정재 · 김용태 · 박성훈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”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,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.

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,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, 어려운 한자어, 외래어·외국어,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제4호

단서 및 제19조제3항제2호 등).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4호 단서 중 “개입한”을 “교체임명한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제2호 중 “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”를 “식물등을 내버려두어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공작물에”를 “인공구조물에”로 한다.

제26조의2제1항제4호 중 “판명되어”를 “밝혀져”로 한다.

제49조제1항 중 “처한다”를 “부과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산업 통상부장관은 전문광해방지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 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.	제15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제14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 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<u>개입</u> <u>한</u>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.	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체</u> <u>임명한</u> ----- --.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(토지등의 수용·사용 등)	제19조(토지등의 수용·사용 등)
①·② (생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	③ -----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. 다만,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광해방지시설에 장애를 주는
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
공급시설을 현저하게 손괴하
거나 그 밖의 광해를 일으키
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
는 경우에 해당식물 등의 변
경 또는 제거

④ · ⑤ (생략)

제20조(토지등의 출입 등) ① 광
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·휴
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
시설의 조사·설치·유지 및
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
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
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
공작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
할 수 있으며, 특히 필요한 때

[illegible]

1. (현행과 같음)

2. 식물등을 내버려두어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토지등의 출입 등) ① --
--
--
--
--
--
인공구조물에--
--

에는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 할 수 있다. ② (생 략) 제26조의2(결손처분) ① 산업통상 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채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 다. 1. ~ 3. (생 략) 4. 채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 나 채납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<u>판명되어</u> 채납액을 징수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(생 략) 제49조(과태료) ① 제13조의2제4 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 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<u>처한다</u>. ② (생 략)	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6조의2(결손처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<u>밝혀져</u>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제49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부과한다</u>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